#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236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김한정·김용민·김회재

신영대 · 신정훈 · 윤관석

이동주 • 이용빈 • 정일영

홍정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또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 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 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 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안정 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 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5항 신설).

아울러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 신설).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3(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입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 4. 후보 입지의 도출・평가・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 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에 입지선정을 신청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의하여도 입지선정이 어려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
인) ① ~ ④ (생 략)	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
	<u>창·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u>
	<u>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u>
	도지사(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
	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
	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
	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

<u>⑤</u> (생 략) <신 설>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의3(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 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입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평가・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 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 참석 거 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 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에 입지선정을 신청 또 는 위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도 입지선정 이 어려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